

#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1
----------	------

2020년 11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일자: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11월 2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 가. 제안이유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 시설 현황

- 시설명: 마포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 부지면적: 58,435m<sup>2</sup>
- 시설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50톤/일(250톤/일×3기)
- 처리권역: 5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주 용 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 자원화
- 주요장비: 소각설비, 재처리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등

### □ 위탁사무 내용

- 위탁기간: 3년(2021.6.1.~2024.5.31.)
- 위탁사무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생산 및 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및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 소요예산(비정산비): 17,877백만원
  - 1차년도(2021.6.~2022.5.) 5,784백만원, 2차 5,957백만원, 3차 6,136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시설건설: 2001.11.~2005.5.(GS건설, 한라산업개발,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 1차 위탁관리: 2006.6.~2009.5.(3년, 한라산업개발 외 3개사)
- 2차 위탁관리: 2009.5.~2012.5.(3년, 한라산업개발)
- 3차 위탁관리: 2012.6.~2015.5.(3년, 한라산업개발)
- 4차 위탁관리: 2015.6.~2018.5.(3년, 한라산업개발)
- 5차 위탁관리: 2018.6.~2021.5.(3년, 한중산업개발, 환경시설관리)

##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기대효과: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 절감 효과 및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됨

## □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020.7.1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자원화수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검토 의견

####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민간위탁 사무기준과 사무내용을 충족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2. 4.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 9. (생략)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총 9가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sup>1)</sup>**가 누락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b>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b>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1)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문서는 기 작성되었으나, 동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문서는 2020년 10월 21일(수)에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제출되었음.

##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sup>2)</sup>은 2020년 6월에 수립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음<sup>3)</sup>.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심의사유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시설/ 재위탁(공모)	3년	적정	-

##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내용 요약

- **종합 의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18년 6월부터 한중산업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 시설은 종전 난지도 매립장이었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시설 운영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화장실 개방 등에만 머물러 있어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전문성이 활용되어 일정 사업성과를

2) 추진 근거, 추진 절차, 시설 현황,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추진 계획,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자원순환과-10101, 2020. 6. 11.)

3)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적정 후속조치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8899, 2020. 7. 27)

창출하고 있으나,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급급할 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개선 요청 사항

-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설비 유지보수 주기와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sup>4)</sup>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법정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 관리역량 교육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이 부재하므로 효과적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함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부족함(예: 회계시스템 사용, 클린카드 사용, 예산 절감 노력 등).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의 운영 노력이 매우 미흡함. 위탁사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제로페이 도입 방안 강구,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2019년 서울시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비산재처리실 철골구조 부식 및 내화재료 탈락 보수' 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조치해야 하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함.

#### □ 검토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누락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다만, 전술한 바 있는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제기된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나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 부지면적 : 58,435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50톤/일(250톤/일 × 3기)
- 처리권역 : 5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재처리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등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1.6.1. ~ 2024.5.31.)
- 위탁사무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소요예산(비정산비) : 17,877백만원(2021.6월~2024.5월)
  - 1차년도('21.6~'22.5) 5,784백만원, 2차 5,957백만원, 3차 6,136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01.11~'05.05 : 시설건설[GS건설, 한라산업개발,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 '06.06~'09.05 : 1차 위탁관리[3년, 한라산업개발외 3개사]
  - '09.05~'12.05 : 2차 위탁관리[3년, 한라산업개발]
  - '12.06~'15.05 : 3차 위탁관리[3년, 한라산업개발]
  - '15.06~'18.05 : 4차 위탁관리[3년, 한라산업개발]
  - '18.06~'21.05 : 5차 위탁관리[3년, 한중산업개발, 환경시설관리]

## 라.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마.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7.1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김성범(☎ 2133-3681)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 [환경부령 제664호, 2016.7.2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
1. 한국환경공단
  -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별표 4의4]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다. 일반기계기사 1명
  -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85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5. 25., 2008. 9. 30., 2011. 7. 28., 2019. 5. 16.>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 5. 25., 2008. 9. 3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66호, 2020. 7.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4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 5. 14.>

[제목개정 2009. 7. 30., 2014. 5. 14.]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전문개정 2017. 7. 13.]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14. 5. 14., 2019. 3. 2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 5. 14.>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9. 7. 30., 2014. 5. 14.>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8.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 2015. 10. 8.>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30.>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9. 7. 30.>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2019. 3. 28.>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6.>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 7. 16.>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2020. 7. 16.>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